

# 附 錄

- I .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정관
- II.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III.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논문투고 및 학회지발행에 관한 규정
- IV.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논문 심사 규정
- V.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 VI. 사단법인 한국유통법연구 원고작성 방법
- VII.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임원명단



# I.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정관

제정 2013. 9. 1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Korea Distribution Law Association : KDLA)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유통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연구하고 관련 산학간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유통법제의 합리화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통인력의 계발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도서의 간행, 출판
3. 유통관련 법제와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조 및 의견 제시
4. 회원 상호간 및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친목 도모
5. 그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유통관련 법제와 정책을 연구·교육하거나 관련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자, 유통기업 및 그 임직원 또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일반회원은 유통법 및 유통관련 법령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유통기업에 종사하거나 유통에 관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 ③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업으로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사회적 실체(entity)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본회의 사업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회원은 건전한 상식과 예절 및 원만한 품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 사유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이 제7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전항의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곧바로 제명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명된 자는 차기 총회에 제명 안을 상정하여 표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9조(임원)

-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약간 명의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② 회장, 부회장, 동기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회는 부회장의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상임)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부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감사는 부회장이나 이사의 비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직전 회장은 후임 회장의 재직기간 동안 명예회장으로 봉사하며, 회장단 회  
이나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회장) 회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은 (상임)이사를 임면하고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회장은 특정한 부회장이나 상임이사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의 유고시에는 등기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유고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회장을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된 회장  
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11조(고문)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① 회장은 본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명망을 갖춘 분을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한다.
- ② 고문은 위촉한 회장과 동일한 기간 동안 재직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임 회장은 해당 인사를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등기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감사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감사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이 1월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5 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회 7일 전까지 문서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총회의 정족수)

-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제17조(총회의결 제척사항)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6 장 이 사 회

#### 제18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주요 업무를 결정한다.

② 회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시 3일전에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중요사항은 3분의 2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회장은 업무처리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제1항의 이사회 소관사항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특정한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회는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이 제18조 제4항에 의해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집과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 제 7 장 재 정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수입) 본회의 수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 경우 회원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 제 8 장 보 칙

제22조(이사회규칙) 이사회는 본 정관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3조(정관변경)

- ① 회장 또는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발의된 정관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③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24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학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 ② 이사 또는 청산인은 본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학회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제25조(회의록 등)

- ① 총회에 참석한 사원은 각자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② 위 제1항과 관련된 총회의사록이나 결의서에 관한 공중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의결권자 전원은 회의록 공중업무에 관한 권리를 등기이사 전원에게 위임한다.
- ③ 등기이사는 위 제2항에 따른 공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1항의 결의사항을 변경 할 수 없다.

제26조(통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통지는 그 내용의 진정성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우편통지 외에 전화나 전송,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산하조직) 본회는 연구분야의 전문화 필요성 등에 따라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제28조(사업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III.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3. 10.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학회장이 지명한다.

④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는 법학교수 또는 법률분야 종사자로서 연구 업적과 대외적 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내부 편집위원의 의견을 듣고 임명한다.

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등에 관하여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과 편집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논문심사규정) 논문의 심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IV.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논문투고 및 학회지발행에 관한 규정

제정 : 2013. 10. 10.

개정 : 2015. 4.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유통법연구」에 게재 할 논문의 투고요령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①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

- ② 법률 분야의 종사자
- ③ 대학원생으로써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 ④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조 (제출기일) ① 「유통법연구」는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발간하며,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를 희망하는 호에 따라 발행예정일의 30일 전(5월 31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원문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또는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한다.

③ 논문을 보낼 곳: 한국유통법학회 <kdl2013@daum.net>

제4조 (논문의 형식) ① 논문은 연구논문, 판례논문, 학술발표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제출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필자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이동전화),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논문은,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A4용지 16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0매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논문은 별첨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논문접수)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편집간사가 담당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장 명의로 논문게재 예정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저작권) 채택된 원고의 저작권은 채택과 동시에 저자와 (사)한국유통법학회에 공동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V.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논문 심사 규정

제정 : 2013. 10.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게재신청논문의 게재여부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제3조(논문심사의뢰)

-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신청한 논문에 대하여 각각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제출한 촉탁논문 및 학술발표논문 등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 이외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게재신청논문의 집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 한다.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결과의 명확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제5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제4조의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출판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1.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정 없이 게재’
2.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재심사 필요’
4. 전면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게재를 유보함’
5. 논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재 불가’

제6조(논문게재여부결정) 게재 신청한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통보)

- ① 출판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 ② 심사위원 사이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에 관하여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하여는 사람 또는 관여했던 사람은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VI.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 2013. 10.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위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의 개방성)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기여도 배분)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5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 및 이사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며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9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 부정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연구 부정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 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 ⑦ 조사 결과 연구 부정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VII. 사단법인 한국유통법연구 원고작성 방법

### 1. 편집용지(A4)의 여백주기 (홑글에서 F7 키를 누름)

- ▶ 위쪽: 55, 아래쪽: 54, 왼쪽: 51, 오른쪽: 51,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 2. 글자모양

- ▶ 서체: 나눔명조, 자간: 0, 장평: 100, 크기: 11.

### 3. 문단모양

- ▶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80, 문단위: 2, 문단 아래: 2, 낱말간  
격: 0, 정렬방식: 혼합.

### 4. 목차의 순서 - 스타일에서

- ▶ I ('큰제목'으로 설정)
- ▶ 1. ('중간제목'으로 설정)
- ▶ (1) ('작은제목'으로 설정)
- ▶ 1) ('아주작은제목'으로 설정)
  - (가) ('바탕글'로 설정)
  - 가) ('바탕글'로 설정)
  - i) ('바탕글'로 설정)

### 5. 각주의 표기방법

- ▶ 저서의 인용: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수.  
(예: 홍길동, 「유통법I」, 유통출판사, 2014, 100면.)
- ▶ 정기간행물의 인용: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호, 출판년도, 인용  
면수.  
(예: 홍길동, “유통법의 개념”, 「유통법연구」, 제1권 1호, 2014, 100면.)
- ▶ 판결의 인용: 대법원 20○○.○○.○○. 선고, ○○다○○판결. 또는 대판 20○

○.○○.○○, ○○다○○.

- ▶ 외국논문, 외국판결 및 법조항인 경우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논문, 판결 및 법조항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합니다.
- ▶ 신문기사의 인용: 신문명, “기사제목”, 일자, 인용면.  
(예: 유통일보,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2014. 2. 1., A3면.)
- ▶ 동일문헌이나 논문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저자명, 앞의 논문(또는 앞의 책), 인용면.  
(예: 흥길동, 앞의 논문, 60면.)

#### 6. 저자의 표기

- ▶ 논문의 제목아래에 저자를 표기하고 오른쪽에 \*표를 하여 각주란에 인적사항을 표기합니다.
- ▶ 공동연구논문의 경우에 책임연구자와 연구자가 나뉘어 지는 경우 각주란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연구자 전원이 책임연구자인 것으로 봅니다.

#### 7. 참고문헌의 표기

- ▶ 논문의 본문 뒤에 중요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목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8. 논문초록의 표기

- ▶ 논문의 본문 뒤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논문초록에는 초록작성 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9. 주제어의 표기

- ▶ 논문초록의 뒤에는 주제어(Keywords)를 국문과 괄호 안에 영문(또는 독일어, 프랑스어)을 병기하여 5개 이상 첨부하여야 합니다.

## VIII.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임원명단

(2015. 6. 30. 현재)

### 고 문

김범호(SPC전무), 임영균(광운대학교 교수), 박주영(승실대학교 교수), 강동남(한국백화점협회 상근부회장), 고인배(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김윤태(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박재구(BGF리테일 대표), 설도원(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 심관섭(미니스톱 대표), 이근협(TV홈쇼핑협회 상근부회장), 이원주(NS홈쇼핑 본부장), 어원경(한국직접판매협회 전무이사), 어청수(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윤일중(GS리테일 고문), 이범돈(크리토피아 대표), 이영덕(한솔도시락 대표), 정승인(코리아세븐 대표), 조상호(SPC 대표), 허연수(GS리테일 대표), 최승곤(에티미(주) 부사장)

회장 : 최영홍 (고려대)

부회장 : 염규석 (한국편의점협회 상근부회장)

감사 : 김인현 (고려대)

### 상임이사

기획이사 : 김천수(인하대), 심영(연세대), 이동원(충북대)

연구이사 : 심재한(영남대), 임정하(서울시립대)

총무이사 : 문상일(인천대), 안수현(한국외대)

출판이사 : 이병준(한국외대), 최난설현(연세대)

섭외이사 : 곽관훈(선문대), 이승준(율촌 변호사), 신호영(고려대), 김경욱(고려대),  
김주형(법률사무소 하우림 대표변호사), 강승준(법무법인 김앤장 변호  
사), 현인섭(단국대)

홍보이사 : 김종수(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홍기(연세대), 박영준(단국대)

학술이사 : 김재두(계명대), 원동욱(우송대)

국제이사 : 김영완(중국 산동대), 양만식(단국대)

부 간 사 : 김은주(고려대 법학연구원)